#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3. 4. 9.

행정·재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**가. 제출일자** : 2013년 3월 26일 / 강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3월 27일

다. 상정일자 :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3. 4. 8.)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권재영 부과과장)

#### □ 개정이유

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,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적용시한이 2013.12.31.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# □ 주요내용

가.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적용시한을 2013. 12. 31.로 함 (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(2013. 2. 15. ~ 3. 7) : 의견없음

라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양귀혁)

- 본 개정조례안은
- 근거법령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일몰개정됨에 따라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부칙 적용시한을 2013.12.31.까지로 개정하는 것임.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은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,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하고는 3년의 기간이내에서 과세면제,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점이 없으며, 또한 현행 '구세 감면 조례'의 적용 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생략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